

<b>보도 일시</b> (인터넷) 2022. 12. 13.(화) 국무회의 종료시 (지 면) 2022. 12. 13.(화) 국무회의 종료시	<b>배포 일시</b> 2022. 12. 13.(화) 08:30						
<b>담당 부서</b>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	<table border="1"> <tr> <td><b>책임자</b></td> <td>과 장</td> <td>노진영 (044-203-6285)</td> </tr> <tr> <td><b>담당자</b></td> <td>사무관</td> <td>윤은정 (044-203-6271)</td> </tr> </table>	<b>책임자</b>	과 장	노진영 (044-203-6285)	<b>담당자</b>	사무관	윤은정 (044-203-6271)
<b>책임자</b>	과 장	노진영 (044-203-6285)					
<b>담당자</b>	사무관	윤은정 (044-203-6271)					

##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-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-

### 주요 내용

- 2023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‘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재학생’에서 ‘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’까지 확대
  - 2023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12월 29일(목)까지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을 위한 ‘사전신청’ 이용을 권장
- 
- 교육부는 12월 13일(화), 국무회의에서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심의·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    -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‘일반대학원의 석·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’에서 ‘특수전문대학원의 석·박사 과정 이수자’까지 확대한다.
  - 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’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(2010년~)이다.
    -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이 개정(2021.6.8.)된 바 있으며,

- 당시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,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시행령에 명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범위를 ‘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’으로 개정하였다.
-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,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‘90. 청년에게 주거·일자리·교육 등 맞춤형 지원’ 추진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·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하였다.
-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(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)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.
  -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약 6천5백여 명으로, 2023년에는 추가적으로 약 7천 명의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고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·방법 등은 2023년 1월 초에 교육부장관의 고시,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.
  -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12월 29일(목)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방문하여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(약 8주간 소요)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‘사전 신청’ 이용을 권장한다.

- 【붙임】** 1.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  
 2. 학자금대출 제도 현황

담당 부서 <총괄>	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	책임자	과 장 노진영 (044-203-6285)
		담당자	사무관 윤은정 (044-203-6271)
			주무관 이은정 (044-203-6270)
<협조>	국세청 학자금상환과	책임자	과 장 이봉근 (044-204-3871)
		담당자	사무관 강석구 (044-238-3882)
			국세조사관 이보라 (044-204-3884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대학생의 범위)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대학생의 범위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</u></p> <p>5. <u>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</u></p>

구분		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	일반 상환 학자금대출																					
신청대상	대상	•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(학점은행제 교육기관, 외국대학 제외)	•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(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)																					
	연령	학부 대학원	• 만 35세 이하 (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) • 만 40세 이하	• 만 55세 이하 (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)																				
		성적기준	학부 대학원	• 신입생 : 제한 없음 • 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제외 • 제한 없음	• 신입생 : 제한 없음 • 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,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제외 • 신입생 : 제한 없음 • 재학생 :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																			
	소득기준		학부 대학원	•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※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•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	•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•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																			
		신용요건	공통 • 제한 없음 (금융채무불이행자, 저신용자 가능)	•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																				
대출금리		• 변동금리('22학년도 기준, 연 1.70%)	• 고정금리('22학년도 기준, 연 1.70%)																					
대출조건	학부	• 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(한도 없음) • 생활비 : 연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	• 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(한도 있음) ※ 대출금액 총 한도 : 대학(전문대학 포함) 4천만원, 5, 6년제 대학 6천만원, 의/치/의/한의계열 대학 : 9천만원 • 생활비 : 연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																					
	대학원	• 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(한도 있음) <등록금대출 총 한도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분</th> <th>총 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석사과정</td> <td>일반/전문기술석사</td> <td>6천만원</td> </tr> <tr> <td>박사과정*</td> <td>일반</td> <td>9천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석·박사 통합과정 포함</p>	구분		총 한도	석사과정	일반/전문기술석사	6천만원	박사과정*	일반	9천만원	• 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(한도 있음) <등록금대출 총 한도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구분</th> <th>총 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석사과정</td> <td>일반·특수/전문기술석사</td> <td>6천만원</td> </tr> <tr> <td>전문/의·치·의·한의계열</td> <td>9천만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박사과정*</td> <td>일반·특수</td> <td>9천만원</td> </tr> <tr> <td>전문/의·치·의·한의계열</td> <td>1억2천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석·박사 통합과정 포함</p>	구분		총 한도	석사과정	일반·특수/전문기술석사	6천만원	전문/의·치·의·한의계열	9천만원	박사과정*	일반·특수	9천만원	전문/의·치·의·한의계열
구분		총 한도																						
석사과정	일반/전문기술석사	6천만원																						
박사과정*	일반	9천만원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	총 한도																						
석사과정	일반·특수/전문기술석사	6천만원																						
	전문/의·치·의·한의계열	9천만원																						
박사과정*	일반·특수	9천만원																						
	전문/의·치·의·한의계열	1억2천만원																						
대출기간	•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('22년 기준 연소득 2,394만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	• 최장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																						
	•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(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)																							
상환방법	• 의무적 상환: 소득에 따라 상환(국세청) ※ 자발적 상환(재단) 가능(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)	•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(월 분할상환 방식) ※ 중도상환 가능(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)																						